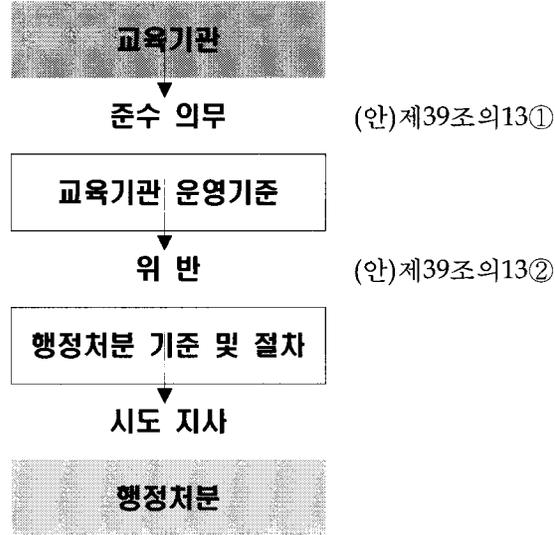


# 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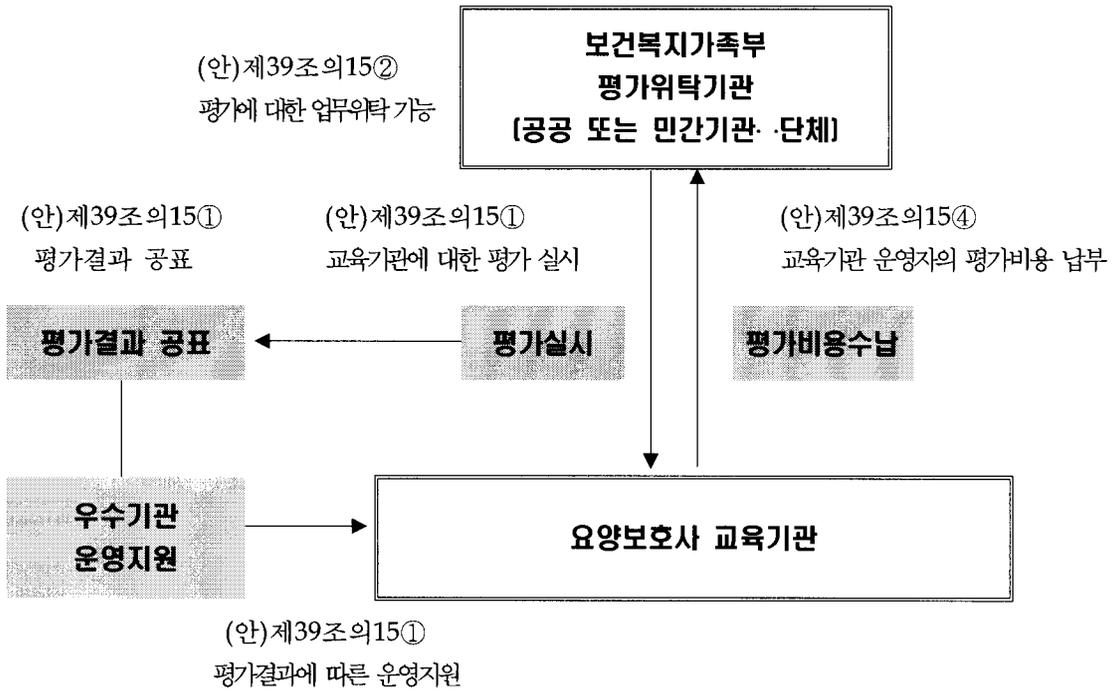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○ 미등록	2. 구분					
			신설	○	강화	내용 심사	○	존속 기한 연장
		○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기준 신설 및 교육기 관 평가·공표	경제적 규제			사회적 규제	○	행정적 규제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</li> <li>○ 노인정책관 김정석, 요양보험제도과장 박정배</li> </ul>			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규제집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요양보호사 교육기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09. 3월말 기준 1,100여개</li> <li>· 이미 지침으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의견 수렴('08.10~11월) 및 각 시도('08.12월)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.</li> <li>· 또한, '08년 교육기관 평가시행 시 교육기관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 평가제도의 법제화로 전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이해관계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지방자치단체(시도, 시군구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운영기준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시도(시군구)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업무 혼선 방지</li> <li>· '08년 평가 시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하였으며,</li> <li>· 우수교육기관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우수교육기관을 널리 알려 교육희망자가 교육기관 선택을 용이토록 정보 제공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5. 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존속기간 미설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운영 내실화 유도과 운영기준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과 교육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설정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<p>&lt;신설규제의 내용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양보호사 교육기관(운영자)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운영기준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(안 제39조의13제1항)</li> <li>○ 운영기준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(안 제39조의3제2항)</li> <li>○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(안 제39조의15제1항)</li> <li>○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평가에 따른 비용을 동 기관의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(안 제39조의15제4항)</li> </ul>							
7. 규제체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지첨부</li> </ul>							

[ 별지 : 규제체계도 ]

<규제사무명 : 영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기준 마련>



<규제사무명 : 영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가 및 결과공표>



## 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### 1. 규제의 필요성

#### 1-1. 문제정의(배경과 원인)

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('08.7월)을 기하여 기존의 간병요양인력의 수준을 향상시켜 요양보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하였으며,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시설에 필요한 간병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음.

○ 우수한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이며,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.

○ 현재 규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은 시설·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다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며, 이로 인해 교육기관 간 과당경쟁 및 변칙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지도·감독에 어려움이 있음

□ 또한, 현재 교육기관 운영기준은 지침 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, 각 시도가 교육기관을 관리·감독함에 있어 운영기준을 위반한 교육기관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·감독에 어려움이 있음.

#### 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

□ 교육기관이 과다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에 의한 지도·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교육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교육 운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 향상 필요.

○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 및 부실교육

기관의 자연 도태 유도

-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, 요양보호사교육 수강희망자들의 교육기관 선택을 용이토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
- 또한, 지침 상 규정되어 있는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제화시키고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
  -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교육내실화와 운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,
  - 시·도로 하여금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 - 운영기준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시도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 담당자의 업무 혼선 방지

## 2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### 2-1. 규제대안의 검토

- 현행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① 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, ② 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, ③ 조사검사의 거부, 방해, 기피 등의 경우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
  - 그 밖에 관련법령(자격기본법 등)들을 준용하여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.
  - 기존의 행정력에 의한 지도감독이나 처분 위주의 규제와는 달리, 교육기관 평가제도는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가치가 있으며 기존 규제와는 성격이 다름.
  -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사료됨

- 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이 행정규칙(별표)에 명시되어 있어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의 근거가 명확한 것에 비해,
  -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지침 상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,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시도와 교육기관 간에 이견의 여지가 있어 업무에 혼선 초래
  - 따라서,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법제화하여 운영기준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, 행정처분을 받는 교육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
  -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시도와 교육기관 간에 이견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

## 2-2.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### □ 비용

- 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
  - 평가대상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  - 이와 관련하여 평가업무 위탁기관이 평가대상 교육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수납하게 되어 비용 발생.
-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시·도의 정기(반기) 및 수시 지도 점검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, 운영기준의 법제화로 인해 시도에 별도의 행정기구, 인력, 예산은 소요되지 않음.

### □ 편익

-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결과가 공표되면,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록 교육기관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,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운영개선 노력으로 교육의 질 향상(편익 발생)
- 또한, 지침 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운영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

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각종 시설들의 운영기준 규정과의 형평성 실현 및 교육의 질 향상 제고.

-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시도와 교육기관 간에 이견의 여지를 최소화 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가능.

#### □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
- 평가제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운영개선 노력 등으로 인해 얻어지는 교육의 질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운영기준의 법제화로 인한 비용 발생은 없으며 정성적인 무형의 편익만 존재 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.

### 3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#### 3-1. 규제의 적정성

- 교육기관 평가제도 도입, 평가결과 공표 및 비용 수납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,
  - 교육기관 운영의 자발적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객관적이고 적정한 규제라 사료됨.
- 교육기관 운영기준은 비중요 규제내용으로써 그간 지침 상 규정되어있던 것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교육운영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그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며, 타당한 규제이며,
  - 교육기관 운영의 적정성, 효과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므로 적정한 규제라 할 수 있음.

#### 3-2. 이해관계자 협의

-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('08.10~'09.1월)한 바 있으며, 법제화를 통한 전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공유

- 또한, 지침으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의견 수렴('08.10~11월) 및 각 시도('08.12월)의 의견을 조희한 바 있음.

### 3-3. 규제집행의 실효성(집행자원과 능력)

- 교육기관들이 평가결과를 의식한 나머지 평가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운영개선이나 수업과정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보여주기 식의 평가가 될 우려가 있으나,
  - 평가 시행기관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 수강생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부작용 최소화하여 실효성 제고
  - 교육기관 평가는 '08년도에 기시행한 바 있으므로(305개 기관 참여, 69개 우수기관 선정) 평가제도 실시여 집행능력의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또한 규제방법이 명료하여 집행상 문제점이 없으며,
  - 시도의 교육기관 지도·점검 시에 법령에 있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규제기관의 수용력을 높여 규제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.